

국회에서 의결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18년 9월 18일

국무총리 이낙연

국무위원

박상기

법무부장관

●법률 제15758호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에”를 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”로, “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, 41세 이상인 경우는 ‘그러하지 아니하다’고 규정되어 있음.

하지만 ‘그러하지 아니하다’는 41세 이상이면 무조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.

이에 대상자의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하여 부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법리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